

제 85회 제 1차 목포시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91년 8월 18일 상오 11시 00분
2. 폐 의 : 단기 4291년 8월 18일 하오 2시 00분
3. 장 소 : 목포시 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김 삼 성
5. 출석의원 : 재직 16명중 전원
6. 출석공무원 : 시장 하동현, 부시장 이병규 및 각과장,
교육감 박세문, 사무장 정무섭
7. 의사일정

◆ 보고사항

- 1) 제 83회 제 4차 회의록 통과
- 2) 제 84회 제 1차 회의록 통과
- 3) 관외출장 결과보고 (서울 김경인 의원)

◆ 부의안건

- 1) 목포시 의회 의장선거의견
- 2) 단기 4291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8. 토의 사항

◎ 제 83회 제 4차 회의록 통과

서기 박찬대 낭독 - 이의 없으므로 통과

◎ 제 84회 제 1차 회의록 통과

서기 박찬대 낭독 - 이의 없으므로 통과

◎ 관외출장결과 보고

◇김 경 인 의원 보고

- 화력발전소 유치운동 차 상경하였던 바 여수로 결정되었다는 일부 지상 보도는 사실 무근지설로서 오는 11일까지는 계속 절충할 필요가 있다는 요지의 보고가 있었음.

◎ 목포시의회 의장 선거의 건

◇의장 김 삼 성

- 상정된 의안이 의장선거인 만큼 부의장과 사회를 교체하게 합니다.

◇강 영 락 의원

- 의장단을 선거할 적에는 최고연장자의 사회로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한다.

◇김 상 대 의원

- 의견의 차이라고 본다. 부의장의 임기가 남아있는 만큼 부의장의 사회가 당연하다고 보아지며 이유는 오는 부의장 선거시에는 의장의 사회라야 하기 때문이다.

◇강 영 락 의원

- 정치도의상 당연히 최고연장자의 사회라야 될 것이다.

◇김 경 인 의원

- 최고연장자의 사회도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사를 진행하여야 될 것이다.

◇김 상 대 의원

- 그 조문은 평상시 정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적의 말일 것이다.

◇이 정 권 의원

- 부의장의 당선이 작년 10월 26일이었던바 이의 임기산정을 결정지어 놓고 하여야 될 것이다.

◇서기 박 찬 대

- 도와의 전화 조복(조회에 답함.)도 있었지만은 개정된 회의 규칙에 의거 부의장의 임기는 당선된 날로부터 1년간보장 되느니 만큼 오는 10월 20일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것입니다.

◇김 상 태 의원

- 도와의 조복운운은 도의해석을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정 부의장을 동시 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김 경 인 의원

- 금차 회기에는 의장 선거의 의안이 상정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이유는 개정된 회의 규칙은 7월 30일에 통과시켰는데 그 공포를 그날 하였다 하더라도 자치법 제10조에 규정된 공포 후 20일이 경과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 오늘날 의장을 선거한다하면은 구 규칙을 통용 시켜야 될 것이다. 그리고 개정규칙의 해석도 부의장의 임기도 의장과 동시만료하게 되는 것으로 본다.

- 집행부에 말하고자 한 것은 여사 애매한 안건에 대하여는 도에 질의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회자체의 의결로써 결정짓도록 하기 바란다.

-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금차 회기에는 의장선거를 삭제하고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후 정부의장을 동시 선거토록 할 것을 동의하고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었다.

◇김 상 대 의원

- 김경인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집행부로서의 의견을 말하여 주기 바란다.

◇총무과장 장 건 식

- 부의장의 임기는 10월 25일이라야 만료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공포기일문제는 연구불능이었으니 도 당국에

질의하여보겠습니다.

◇강 영 락 의원

- 개정회의 규칙의 공포를 7월 31일에 하였으니 그 후 20일이 경과한 오는 8월 20일에 의장선거를 하도록 의사일정을 변경함이 되리라고 본다.

◇김 상 대 의원

- 강영락 의원의 발언대로 정식개의로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어 표결한결과 김상대 의원 개의를 재석 16명중 찬성5표로 부결되고 김경인 의원 동의도 재석 16명중 찬성 7표로 부결되다.

◇정 응 표 의원

- 이 문제를 선의로 해석하자면 김상대 의원의 동의대로 최종일인 금월 20일에 선거 할 수도 있다고 보아지는데 요는 공포문 게재여부에 대한 물의를 귀결지여야 되리라고 보아진다.

◇김 창 희 의원

- 동의 집과 개의 집 양론이 부결 되었으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정략적인 면을 지양하고 하루속히 의장을 선거함으로써 의회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되리라고 보아지니 금 차 회기를 금월 22일 까지 2일간 연장할 것을 동의하여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었다.

◇김 경 인 의원

- 김창희 의원의 발언은 인격적 모욕언사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본 의원이 일일이 시비를 들어 지적하였고 법에 입각하여 실시하자는데 무슨 이의가 있겠는가 전반 본의원이 제안한 동의대로 개의하오니 찬성하여주기 바란다.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어 표결한 결과 재석 16명중 9명 찬성으로 가결되다.

◇김 경 인 의원

- 개정된 회의규칙 제8조의 해석을 완전히 귀결짓도록 토론을 전개할 것을 동의하여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어 표결한 결과 찬성이 5명으로 부결되다.

◎ 단기 4290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교육감 박 세 문

- 제안 이유를 설명하다.

◇김 일 섭 의원

- 본 건을 조상(도마위에)에 놓고 좌담회가 개최 되었다는데 그 경위를 설명하여주기 바란다.

◇이 정 권 의원

- 그것은 영업세 배시액 조절에 대한 좌담회 석상에서 논의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 집행부로부터 배부한 안건은 제 3회를 제 4회 추경으로 한 것 이었는데 또 다시 제 3회에 추가한 것 같이 바뀌게된 경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의장 김 삼 성

- 본 건 명 19일에 오전중 문사위를 거쳐 오후 2시부터 내무위원회에 심의 하도록 회부할 것을 선언하다.

◇강 영 락 의원 긴급 동의

- 당시 의회의 결의로써 해양고등학교에 백만환의 보조를 하여주도록 집행부에 건의 가결이 된바있었는데 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60만환 정도라도 조속히 보조하여 줄 것을 건의하도록 동의한다.

◇정 응 표 의원

- 1차 백만환 보조의 결의가 되었으니 60만환이라는 뜻을 박을 것이 아니라 집행부 측에 촉구정도로 그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김 성 균 의원

- 직원 처우개선에 따르는 제반애로도 있을 것이니 집행부 측의 의견을 말하여 주기 바란다.

- 본 건 예산조치후 보조가 될 것이나 현금은 연도말이라야 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시비로 보조한다는 것은 더 연구하도록 여유를 주기 바랍니다.

- 강영락 의원 동의를 표결한 결과 전원 찬성하다.

◇명 남 철 의원

- 교육청 사무장의 경질일자가 상당시일에 달하였는데 사무인계가 미료(미완료)된 이유여하

◇박 교육감

- 현재 서류상으로 인계 인수중에 있습니다.

◇의장 김 삼 성

- 산회 선언하다.

(하오 2시 현재)

위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91년 8월 19일

시의원 김 창 희

시의원 김 상 태

작성자 서기 주 도 식

제 85회 제 2차 목포시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91년 8월 20일 상오 11시 15분

2. 폐 의 : 단기 4291년 8월 20일 하오 1시 30분

3. 장 소 : 목포시 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김 삼 성

5. 출석의원 : 재직 16명중 출석 의원 13명
결석의원 천철수, 임석희, 박두순 의원

6. 출석공무원 : 시장 하동현, 부시장 이병규 및 각과장,
교육감 박세문, 사무장 정무섭

7. 의사일정

◆ 보고사항

1) 내무위원회 종합심의 결고 보고

◆ 부의안건

단기 4290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8. 토의사항

◎ 내무위원회 종합심의 결과 보고

◇김 일 섭 의원

- 문사위에서 3:1로 통과된 것을 회부되어 왔는바 내무위에서는 3:1로 통과 시켰으며 문사 내무각 기권1표씩 있었습니다.

◎ 단기 4290년 목포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김 창 희 의원

- 본 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도 검토할대로 검토하였고 심의하였으며 원래 교육 위원회제도가 이러한 악조건의 환경 속에 노여 있고 목포교위만 하더라도 전교육감 시대부터 형크러 놓은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공통된 일일 진대 선의로 해석하여 원안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하다.

◇김 경 인 의원 대 집행부 질문

- 1) 신규사무장의 인계인수를 못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여하
- 2) 과년도 미 지출액
- 3) 인계인수를 받지 않을 심사는 없는가
- 4) 이렇게 되면 교육감의 태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 5) 3회추경에 재산매각대를 계산한 것 같이 하면 도와는 여하한 정도로 교섭되었는가

◇김 상 태 의원

- 1) 징세여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항목에서 유용한 사유여하
- 2) 사범학교 시설비보조를 잡지출에서 지출한 사유여하

◇정 사무장 답변

- 사무인계가 지연된 이유는 전임지에서의 부임절차상 다소 늦게 부임하였으며 채무액 조서를 세부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으니 그 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서면으로 명시될 것이니 그때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교육감 답변

- 1) 도와 절충문제는 사무적인 면이오니 제의원의 위신손상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 2) 여비는 시달리는 징세직원들의 위로 출장여비로 지출코자 하였습니다.
- 3) 사범학교조는 부담금으로 추경 시 통과된 것입니다.

◇김 상 태 의원

- 아직까지 사무인계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책임함과 무능함을 폭로시킨 것이다. 언제 까지나 될 것인가 확실하게 대답하기 바란다.

◇정 사무장 답변

- 채무조서를 세분하여 제출토록 하였으며 현금 전임자가 부채중이니 귀가 즉시 단 시일 내 완료하겠습니다.

◇이 정 권 의원

- 측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인계서면에 나타난 부채가 900여만원에 달하고 숨어 있는 것이 200여만원이 넘는다고 하니 앞으로 부과될 2기분 교육세로 어떻게 이 부채를 상환하여가며 신설 국민학교를 지을 것인가 확실하게 주기 바란다.

◇박 교육감 답변

- 그 액수를 아직 확실치 않으며 형식상 부채로 넘어가는 것이나 거개가 정부보조로 충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설교 건축문제는 징세확보가 관건이오니 책임 있는 답변은 곤란한 것입니다.

◇김 성 균 의원

- 김창희 의원의 동의에 재청한다.
- 삼청이 있었다.

◇이 정 권 의원

-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통과시킬 적에도 신설교 건축을 조건부로 하였는데 금년도에도 이와 같은 현상을 나타낸다면 의회의 책임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통과시키기 곤란한 문제이다.

◇명 남 철 의원

- 결산 내용이 어느 개인의 착복과 부정이 개재되지 않는 한 그 승인여부를 결정지어야 될 것이다.

◇김 창 희 의원

- 동의에 표결하여 재석 13명중 찬성 5명으로 부결되다.

◇김 경 인 의원

- 1) 사무인계당시 커다란 차질이 생긴다고 가정하면 이를 여하히 수습할 것인가
- 2) 부채상환 방법과 앞으로 있을 공무원 처우개선 대책을 계수적으로 연구하여본 일이 있는가

◇명 남 철 의원

- 교육위원회 부채가 9백만원여에 달한다고 함 정부양곡대 등을 공제한 실지 부채가 어느 정도인가 밝혀주기 바란다.

◇김 상 태 의원

- 교육감은 시종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하나 교육행정에도 백지일뿐 아니라 인사행정에도 졸렬하다 이기회에 사퇴할 용의는 없는가

◇박 교육감 답변

- 1) 채무액면은 사무인계상에 나타난 수자에 불과합니다.
- 2) 직원처우개선 조치는 도의 지시에 따라 선처하겠으며 구상한바 없습니다.
- 3) 국민학교 신축은 하겠습니다.
- 4) 인사 행정문제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 창 희 의원

- 원안 통과 동의에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어 표결한 결과 제적 13명중 7명이 찬상하여 가결되다.

◇김 남 진 의원

- 대집행부 질의 전개할 것을 동의하여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김 남 진 의원

- 수도권을 절단하여 누수가 극심한 곳의 대책을 여하히 세우고 있는가

◇명 남 철 의원

- 뇌염 방역 대책 태세여하

◇김 창 희 의원 긴급 동의

- 당시에 근해에 훌륭한 어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냉동차와 통조림 공장등이 없는 관계로 타항으로 어획물을 뺏기고 있는 것이다. 이 기회에 냉동차 증결 및 통조림공장 신축등을 상공회의소 변영회등과 합세하여 중앙요로에 진정단을 구성 건의할 것을 동의하다.

◇정 응 표 의원

- 김창희 의원의 동의에 찬성하면서 본 의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동체가 되고 상공회의소 어련등과 합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있는 일을 하여야 될 것이다.
- 김창희 의원 동의를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의장 김 삼 성

- 소위 위원명단을 발표하다. 김창희, 김일섭, 김경인, 박두순 의원을 지명하였다.

◇김 상 대 의원

- 모 지상보도에 의하면 천주교 주최로 유달교 교정에서 영화를 상영하였는데 산회할 적에 교문이 좁아서 부상자가 20여명이 났다는데 이는 숙직원의 부주의로 기인한 것이 아닌가

◇김 남 진 의원

- 저번 시정감사 종료 후 총무과외의 각과 간부진의 불평이 자자한데 그 이유는 각과별로 부득이한 판공비도 배당안한 관계라 한다. 결국 총무과는 이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타과는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부정을 키우

는 온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흑자재정을 해가면서 정당한 경비지출을 안하고 있어 시청은 흡사불량배 양성소 같은 인상을 주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재무과는 지금도 의결부와 합의행정을 하고 있음으로서 과세상 불평의 여론이 나온 것이다. 이러한 행정을 쇠신하기 바란다.

◇김 성 균 의원

- 1) 저번 회의에서 역전광장의 보수책과 하수구 구멍 등을 실이 하였을 적에 2천 2백 만환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 하였으나 모업자의 말에 의하면 20만 환정도면 되리라한다. 그리고 구멍은 눈을 씻고 보아도 없었다. 이에대한 대책 여하.

- 2) 요즘 신탄대가 배이상으로 올랐다니 이에 대한 대책여하

- 3)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교육청 직원 중에 모략을 일삼는 자가 많이 끼어있다고 하니 이러한 분자를 처단 용의는 없는가

◇정 응 표 의원

- 1) 요즘 일부 청내계장은 현금의 의회분과세력을 악이용하여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과장운동을 하고있는데 이러한 분란을 처단할 용의는 없는가

- 2) 죽교동 시민은 요즘 급수시간중 물을 받지 못하고 대성동 남교동 방면에서 근근히 한지게씩 얻어먹는 형편인데 전시를 통하여 죽교동민의 납세 성적이 가장 양호하다고 보아질 적에 너무 불공평한 수도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기 바란다.

◇김 상 태 의원

- 1) 죽동 강대진 지물상으로부터 31여관에 통하는 도로의 하수구를 처주기바란다.

- 2) 저번에 하시장은 광주검찰청에 출장한바 있었다는데 시장자격인지 개인자격인지 알고싶으며 공무이라면 무슨 용건인지 공개하여 주기바란다.

◇이 정 권 의원

- 교육청 직원은 시 본청과 달라서 동료끼리 모략중상이 극심하여 혼란을 이르고 있는데 교육감은 이러한 분란을 처단할 용의는 없는가

◇김 남 진 의원

- 1) 자치행정 수립후 겨우 수습해놓은 동행정이 패퇴일로를 걷고 있으며 용당동같은 곳은 사무소벽이 무너져가는 형편인데 주무계에서는 이 실정을 조사하여 본 사실이 있는가
- 2) 건설과 인화문제가 지극히 결여 되어가고 있는데 시장은 이를 묵과 할 것인가

◇이 정 권 의원

- 각동에 동청사 수선비, 소모품비 및 특별판공비의 긴급 배부책을 요망한다.

◇라 보건계장 답변

- 뇌염예방 대책에 대하여 금일 현재 3명이 이환하여 대성병원에 격리시켜 시립병원원장이 직접치료에 당하고 있는데 그 경과가 대단히 양호합니다. 이의 예방책으로는 이환가정 인근에 소독을 실시하는 등 그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 일 섭 의원

- 온금동의 속칭 꾀보선장은 거금(지금으로부터 40년전에 개설한 당시 유일무이한 방파제)인바 그후 1차의 준설도 없어서 지금은 10여톤의 소형선 입출항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현상이니 김창희 의원이 동의한 소위원회에 본안도 첨가하여 준설촉구책을 추진토록 하여주기 바란다. (동의 집수락)

◇김 상 태 의원

- 창평동 주민으로부터 제기하였던 창고건축반대진정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었음.

◇김 경 인 의원

- 저번에 영업세 배신액감세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2,4분기분은 이미 시기가 늦으니 2,4분기분에 대해서라도 조절하수 있도록 거시적인 면에서 운동을 전개하여 소기의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주기 바란다.

◇의장 김 삼 성

- 폐회 선언하다.

(하오 1시 30분)

위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91년 8월 22일

시의원 김 상 태

시의원 김 상 대

작성자 서기 주 도 식